

소통하는 의정  
공감받는 의회

제369회 정례회  
'18. 11. 23.(금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8년 10월 31일
-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05일

## 3. 제안이유

- 제2충북학사 건립으로 3개 학사(서울2, 청주1)의 명칭 통일 및 도민 이용 편의 등을 위해 학사 시설명칭 변경 필요
- 충북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 용어 일부 수정

## 4. 주요내용

- 충북학사 시설명칭 변경(안 제1조, 안 제2조)
  - (당초) 충북학사 ⇒ (변경) 충북학사 서서울관
  - (당초) 충북학사 청람재 ⇒ (변경) 충북학사 청주관
  - (가칭) 제2충북학사 ⇒ 충북학사 동서울관
- 현행 조례의 용어를 일부 수정함
  - ‘운영법인’ 을 ‘법인’ 으로 수정(안 제4조, 안 제6조, 안 제7조, 안 제8조)
  - ‘공유재산 및 물품’ 을 ‘공유재산 등’ 으로 수정(안 제5조, 안 제6조)
  - ‘책무’ 를 ‘의무’ 로 수정(안 제6조)

## 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최영지)

## 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제2충북학사 건립으로 3개 학사(서울2, 청주1)의 명칭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.

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2조에서는 서울소재 제2충북학사 건립에 따라, 총 3개 학사의 명칭을 도민이 알기 쉽게 변경함.

현 행	개 정 안
○충북학사 (서울 소재)	○충북학사 서서울관 (서울 소재1)
	○충북학사 동서울관 (서울 소재2)
○충북학사 청람재 (청주 소재)	○충북학사 청주관 (청주 소재)

- 다만, 부칙에서 본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2019년 1월1일로 정하고 있고, 본 개정안 공포시기가 12월 중순 정도로 판단되는데, 기존 제 반 서류양식 및 내·외부 홍보물 등의 명칭 변경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, 준비기간에 무리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함.
- 안 제4조에서는 ‘재단법인 충북학사’의 약어표기를 ‘운영법인’에서 ‘법인’으로 변경하였고, 이에 따라 안 제6, 7, 8조에서도 변경된 약어표기로 개정함. 이는 약어표기 사용 시 의미전달에 무리가 없으며, 효율성 원칙에도 부합한 것으로 타당함.
- 안 제6조에서는 조 제목 중 법인의 ‘책무’를 ‘의무’로 변경함.
  - 책무는 직무에 따른 책임이나 임무를 뜻하고, 의무는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을 의미함.
  - 제6조의 조항 내용을 보면, 법인의 시설 및 인원 확보, 공유재산 등

의 사용범위 제한,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, 조례 및 규정 준수 등 법인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, ‘책무’를 ‘의무’로 변경하는 것은 정확한 용어사용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.

#### 다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제2충북학사 건립에 따라 3개 학사의 명칭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고 일부 약어 표기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,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됨.